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341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윤건영·박지원·이기헌

신정훈 · 김영배 · 한병도

모경종 · 김주영 · 노종면

김영진 · 강훈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국민 대부분이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게 되는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국민 개인의 노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특히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있음.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싼 환경부장관 지정 표준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 상한계가 있음.

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 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 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 항제2호).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	자원순환 촉진) ①
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	
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	
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	
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	
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	,
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	
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	2
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	
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품을 판매하는 <u>경우</u>	<u>경우[「가맹사업</u>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

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 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로 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